

(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 (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김신범<sup>1)</sup>

노동환경건강연구소<sup>2)</sup> 화학물질센터 실장

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련의 주제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표시제도가 가진 문제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알권리 =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생각이 퍼져있지만, 해외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보다는 오히려 라벨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례들이 많았다. 알권리의 핵심은 '물질의 정체(identity)'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분명이나 카스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라벨은 제품 내 함유성분의 명칭과 카스번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 여러나라에서 제출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표시제도(라벨)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의 화학물질 알권리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sup>3)</sup> 이 당시 해외의 법률에서도 막연하게나마 경고표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제정 초기부터 일부 물질에 대한 성분 공개와 경고가 반영되었다.

표 4. 1981년 최초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유해물질표시

제29조(유해물질표시) 벤젠·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
--

1) 연락처 : 02-490-2089, sb.kim.wioeh@gmail.com

2)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된 민간연구소. [www.wioeh.org](http://www.wioeh.org).

3) 법 제정은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였다.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집권한 정권이 생색내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이를 수렴하여 제도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때, 시행령 25조와 별표 7에서는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을 따로 정하였다. 그야말로 일부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이었고, 독성의 종류와 크기도 일관되지 않아 왜 이 물질들만 지정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표 5. 1982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유해물질표시 대상물질

제25조(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은 별표7과같다.
[별표7]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제25조 관련) 1. 노말렉산 2. 벤젠 3. 아크릴로니트릴 4. 알킬수산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의 것에 한한다) 5. 에틸렌이민 6.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7. 요오드화메틸 8. 카르보닐니켈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10.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 아세틸렌) 11. 톨루엔 12. 톨루엔 2.4-다이소시아네트 13. 트리클로로에틸렌 14. 1.1.1-트리클로로에탄 15.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16. 황산디메틸 17. 이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조트리클로리드, 8.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 목록은 1997년까지 아래 표에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2003년 6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2003년 시행령 개정은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표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제31조관련)

1. 노말렉산
2. 니트로글리콜
3. N.N-디메틸아닐린
4. N.N-디메틸포름아미드
5. 1.4- 디옥산
6.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7. 삭제 <1995.10.19>
8.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9.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10.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1. 마젠타
12. 망간과 그 화합물
13. 메틸부틸케톤
14. 메틸시클로헥사논
15. 메틸시클로헥사놀
16. 메틸에틸케톤
17. 메틸이소부틸케톤
18. 바륨염(바륨셀페이트를 제외한다)
19. 베타-프로피오락톤
20. 벤젠
21. 1-부타놀
22. 2-부타놀
23. 불화수소
23의2. 2-브로모프로판
24. 브롬화메틸
25. 사염화탄소
26.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을 제외한다)
27. 시안화나트륨
28. 시안화수소
29. 시안화칼륨
30. 시클로헥사논
31. 시클로헥사놀
32. 스티렌
33. 삼산화비소
34. 아세톤
35. 아크릴아미드
36. 아크릴로니트릴
37. 1-알릴옥시-2.3-에폭시프로판(알릴글리시딜에테르)

38.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39.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40.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41.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텟(셀로솔브아세텟)
42.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43. 에틸에테르
44. 에틸렌이민
45.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들)
46. 연 및 그 화합물
47. 오라민
48. 오산화바나듐
4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50.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51. 요오드화메틸
52. 염소
53. 이소부틸알콜
54.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55. 이소프로필알콜
56. 이황화탄소
57. 질산나트륨
58. 질산칼륨
59. 중크롬산과 그 염 및 크롬산과 그 염
60. 초산메틸
61. 초산부틸
62. 초산에틸
63. 초산이소부틸
64.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65. 초산이소프로필
66. 초산펜틸
67. 카드뮴 및 그 혼합물
68. 카로보닐니켈
69. 콜타르
70.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71. 클로로메틸에틸에테르
72. 클로로포름
73. 클로로벤젠
74. 크레졸
75. 크실렌
76.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77. 톨루엔

- 78.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 79. 삭제 <1995.10.19>
- 80. 트리클로로에틸렌
- 81. 1.1.1-트리클로로에탄
- 82.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 83.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 84. 페놀
- 85. 펜타클로로페놀(PCP) 및 그 나트륨염
- 86. 포름알데히드
- 87. 황화나트륨
- 88. 황화수소
- 89. 황화수소나트륨
- 90. 황산디메틸
- 91.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 92. 제29조 각호 및 제30조 각호에 규정된 물질
- 9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

이러한 표시제도는 일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성격이 존재하였을지 모르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았을 수도 있다.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독성이 크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물질들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도입

### 1) 도입배경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1994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시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물질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수정없이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노동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이러했다.

“안 제41조에서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제1항), 경고표지부착·교육실시 등 조치를 하며(제2항),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고(제6항), 양도 또는 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는 등 관련운영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노동부장관이 동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의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제4항),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3만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자료의 파악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 20만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의 국내반입·사용처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며 나아가 향후 BR 및 OECD 가입에 대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 동 제도의 도입으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을 생산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추적·관리함으로써, 취급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사의 관심유도 및 정보공유로 자율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화학물질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재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됨.”<sup>4)</sup>

## 2) 법률의 내용과 특징

당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이러했다.

표 7. 199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에 관한 규정

<p>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의 명칭</li> <li>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li> <li>3.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식을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p> <p>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4.

첫째, 포괄적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라고 규정되어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대부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되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란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제외 대상

<p>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li> <li>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li> <li>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li> <li>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li> <li>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li> <li>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li> <li>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li> <li>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li> <li>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li> <li>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li> <li>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li> <li>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li> <li>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li> </ol>
--

둘째, 작성 주체

화학물질 또는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 정보는 제조 및 수입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제조수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화학물질에 관계된 사업자 누구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 생산의 책임이 모호해지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야기하였다.

셋째, 경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 대해 합당한 경고표시가 주어져야 했다. 이는 고시로 정하게 되었다.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도록 한 것도 일종의 알권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

3) 경고표시

모든 화학물질에 경고표시로서 라벨이 의무화된 셈이다. 그런데, 노동부 고시에서는 라벨에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라고 하여, 세부적인 성분명은 밝히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표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7-27호) 제12조 경고표지

<p>제12조【부착내용 및 방법】①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다만, 그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하며, 경고표지내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제품상호의 명칭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별표표시” 또는 “앞면표기”로 기재할 수 있다)</li> <li>2.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유해그림</li> <li>3.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li> <li>4.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li> <li>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li> </ol>
--

## 4) 영업비밀

초기부터 영업비밀은 보장되고 있었다. 법률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지만, 고시에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고시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1997년 고시에서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영업비밀로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명, 카스번호, 그리고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sup>5)</sup>

표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1997년)

<p>제5장 비밀유지</p> <p>제19조【비밀유지 항목】①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중에서 화학물질명등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상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에는 “영업비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명</li> <li>2.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li> <li>3. 구성성분의 함유량</li> </ol> <p>제20조【비밀유지 적용배제】①삭제 97. 1. 4</p> <p>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항목을 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련의사가 치료목적을 위하여 긴급하게 제19조제2항 각호의 항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li> <li>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19조제2항 각호의 항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청한 경우</li> <li>3. 시행규칙 제9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li> <li>4.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li> </ol>
---

5) 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1997.

대표가 단체협약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치료목적 또는 근로자건강보호 목적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시켜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영업비밀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는 데, 고시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정해놓고 있어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3. 중요한 법 개정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시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 표시제도의 폐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표시 조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조항이 서로 중복된다고 보고, 2002년 3월 3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11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내어 정부의 개정을 지지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안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항 관련) 개정안은 법 제39조의 유해물질 표시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로 흡수하고 있음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먼저 제1항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운데 제1호는 화학물질의 명칭외에 성분 및 함유량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에 규정된 “성분 및 함유량” 규정을 상향 규정한 것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봄. 다음 개정안의 제41조제1항제3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외에 물리·화학적 특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화학물질 취급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으로 “물리·화학적 특성”보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고, 개정안 제41조로 흡수·삭제된 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표시사항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인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음, 현행 제41조제2항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동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고표지 부착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 후단에 “이 경우 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항에서 이미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다만 부착위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제3항의 경고표지 부착위치를 제2항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개정으로 보여지는 바, 제2항중 “경고표지를 부착하고”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sup>6)</sup>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제41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 11.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변경된 제41조

<p>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lt;개정 2002.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li> <li>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li> <li>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개정 2002.12.30&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p> <p>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

이와 함께 제39조 유해물질의 표시 조항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조항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의 분류(관리대상물질의 지정 등)가 공식화되었다.

## 2) 법률에 영업비밀 보호를 명시

2005년 11월 2일 정부에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사유를 설명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노동부 고시에 영업비밀이 보장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은 영업비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6)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200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인정(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관련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현재 노동부 고시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2)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도록 함. (3)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유해·위험정보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sup>7)</sup>

그리고 2006년 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그 취지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물질자료의 작성·게시는 사업주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산업안전고시」 제19조3)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한해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문제는 현행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인 노동부고시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그 의무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임.”<sup>8)</sup>

결국 정부의 법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요청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고시에 있었는데, 이것도 함께 법안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표 12.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3월 24일)시 신설된 영업비밀 항목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영업비밀을 법률에 공식 인정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이 무한히 보장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정하는 물질은 영업비밀에서 제외되도록 보완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2006년 시행된 개정법률의 내용이었다.

7)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2005년 11월 2일).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도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의 개정 배경은 이렇게 설명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하되,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함. (3)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sup>9)</sup>

표 13.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9월 25일)시 신설된 영업비밀 항목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고시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영업비밀 제외 대상물질 목록이 등장하였다. 금지물질과 허가대상물질은 물론 관리대상물질은 영업비밀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는 환경부의 유독물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독물이 추가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표 1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006년)

제19조【식별정보의 표시】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유해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유해물질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표 15.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013년)

제19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2006년 9월 25일). <https://www.moel.go.kr>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이로써 영업비밀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변화가 마련되었다.

###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 제한

2011년 4월 11일 정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를 명확하게 제조 수입자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률심사를 거친 보고서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에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비치 및 경고표시 의무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 모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가 가능한 의무주체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입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인데, 현행 규정과 같이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외국의 사례<sup>10)</sup>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주에게 원활히 제공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생산·제공 의무를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대신 이 때 이미 제출되어 있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원입법안) 등과 병합하여 조정되어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환경노동위원장이 대안 제출한 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이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애초 노동부가 제출한 개정 취지와 동일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등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입수할 수 있는 주체인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주체와 그 의무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sup>11)</sup>

10) 심사보고서에 있는 각주를 그대로 소개함.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

- 미 국 : 29 CFR 1910.1200.(Hazard Communicaton Standard)
- 일 본: 노동안전위생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 독 일: Gefahrstoffverordnung-GefStoffV(Hazardous Substances Ordinance)

결국, 제조 수입자에게 MSDS 작성의무 단일화되는 내용이 2011년 7월 25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고, 이 법률은 2012년 1월 26일 시행되기에 이른다.

표 16. MSDS 작성 주체의 명확화(2011년 7월 25일 개정사항)

2010년 6월 4일 개정	2011년 7월 25일 개정
<p>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p>	<p>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 4) 영업비밀의 근거 마련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전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45.5%에서 발견되었다.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노동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영업비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로서 영업비밀은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된 것이다. 이것은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반영되었다.

표 17. 영업비밀의 제한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2012년)

<p>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

11) 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2505. 2011.

## 4.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라벨의 문제점

이 보고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어렵다거나,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거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목적은 없다. 오히려 이런 내용은 일부러 다루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것은 등장할 때부터 전문가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운명 같은 것일지 모른다.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것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모든 연구보고서에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꺼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은 어떠한 점에서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찾아내는 것이 이 보고서의 작성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라벨) 제도는 우선 정부가 정한 물질(타법 적용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질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영업비밀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물질이나 환경부의 유독물에 해당하면 물질명과 카스 번호 등을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비밀 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법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영업비밀 제한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자체 한계와 함께 제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근거로 영업비밀을 제한한 것은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환경부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이다. 이 법률을 해석하자면, 영업상의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경제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4) 유용성(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sup>12)</sup>

현재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조 수입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영업비밀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근로감독이란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대상에 대해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년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력해서 확보한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12) 소병천. 화학물질 정보공개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재난 관리 계획·시행에 있어 개선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2014.



유럽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물질의 정체(물질명과 카스번호)를 영업비밀로 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그러하다. 미국만 승인절차가 없다. 대신, 뉴저지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사전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단순한 이유이다.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옳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면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업이 애써서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노력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비밀을 보호하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제조 수입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에 대해 주장할 경우 사전신청에 의해 승인받도록 하거나, 입증서류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해 관리대상물질이나 유독물질 경우 영업비밀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는지는 생각해볼만 하다. 유럽의 경우 경미한 독성에 대해서만 영업비밀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관된 독성분류기준(CLP)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우리는 관리대상물질이나 유독물질이 아니라도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잔류성, 농축성, 내분비교란성, 과민성 물질이 존재한다. 즉, 고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제외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국내의 시스템이 관리의 대상물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향후, 알권리와 관련하여 관리의 대상물질로 영업비밀을 제한하는 틀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라벨을 통해 화학물질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알권리는 화학물질의 정체(물질명과 카스번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독성정보는 그 다음이다.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면 독성정보는 검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노동자들이 독성정보를 확인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에 성분표시와 카스번호가 제공되느냐 아니냐는 알권리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벤젠 등 일부 물질에 대해 라벨로 성분표시를 의무화하였다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통합하면서 라벨의 성분표시는 제품명 표시로 대체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라벨을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별개의 독립적인 알권리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라벨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다. 이 때, 라벨의 사진을 통해 물질의 성분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면 노동자의 알권리는 크게 신장될 것이다.

3) 일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는 관리대상물질이 아니거나 유독물질이 아니지만, 이 물질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독성이

그대로 분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즉, 현재는 영업비밀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게 되는 물질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암연구소나 미국국립독성학프로그램에서 10년 후에 발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할 때, 분명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제품에 영업비밀이 되어 있고, 독성정보에는 해당 영업비밀 성분에 별 독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큰 우려 없이 물질을 사용하고 노출되었다. 하지만, 이 노동자가 30년 후 신장암에 걸렸다. 노동자는 자신이 노출되었던 물질들을 모두 되짚어 보았으나, 신장암을 일으킨다는 물질을 찾아낼 수 없었다. 영업비밀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지만, 이미 생산업체는 문을 닫은지 오래였다. 영업비밀 성분 중에 발암물질로 새로이 밝혀진 것은 없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추적은 불가능했다. 피해자는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현재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분은 누군가에게 보관되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피해자가 그 성분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 5. 알권리 실현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라벨에는 성분과 카스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라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만큼 소중한 알권리 도구로 인식되어야 한다. 라벨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유럽의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sup>13)</sup>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제한 대상은 관리대상물질이나 유독물질이 아니라, 독성에 근거한 기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유럽의 방식은 그 길을 보여준다.<sup>14)</sup>

셋째, 영업비밀 승인 또는 등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재산권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만 비밀로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정력이 대거 필요한 개선방안이므로, 중간단계의 개선방안으로서 영업비밀 전산등록시스템을 정부가 운영하는 과도기를 거치도록 한다. 영업비밀 전산등록시스템은 전산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신청서와 함께 영업비밀로 하고자 하는 성분의 명칭과 카스번호가 기록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된 자료에 대해 사후 검토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지

13)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1)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기업비밀. 2015.

14) 위의 자료

를 통해 영업비밀 정보 공개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담겨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공개되도록 한다. 대신, 계속 영업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년간 유지하면서 영업비밀을 남용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한다면, 행정력을 심각하게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사전 승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김신범 실장의 이메일로 의견을 주기 바란다.